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10.(목)

검 토 안 건	발 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승인안(복지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안 건 명

가.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결산 승인안

나.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안건번호

의안번호 : 제26-62호, 제26-63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6년 8월 21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회부일자 : 2026년 8월 24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결산의 수행)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마.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Ⅰ. 총괄개요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마 포 구	**1,077,820,499,745**	**1,113,716,011,589**	**1,084,637,135,369**	**27,126,474,550**	**97.4**
일 반 회 계	1,030,609,107,225	1,055,109,822,526	1,033,634,562,976	19,924,601,190	98
특 별 회 계	47,211,392,520	58,606,189,063	51,002,572,393	7,201,873,360	87
복지동행국(복 지 국)	**254,441,124,000**	**249,188,432,990**	**249,036,654,780**	**151,778,210**	**99.9**
일 반 회 계	253,508,609,000	248,166,148,880	248,014,670,670	151,478,210	99.9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932,515,000	1,022,284,110	1,021,984,110	300,000	99.9

※ **수납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44억 4,112만 4천원으로 이는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현액의 23.6%를 차지하는 수치임. 징수결정액은 2,491억 8,843만 2,990원이고 이 중 99.9%인 2,490억 3,665만 4,780원을 수납하고, 1억 5,177만 8,210원이 미수납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35억 860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81억 6,614만 8,880원이며 이 중 99.9%인 2,480억 1,467만 670원을 수납함.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9억 3,251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228만 4,110원이며 이 중 99.9%인 10억 2,198만 4,110원을 수납함.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집행률 (%)
마 포 구	**1,077,820,499,745**	**964,593,934,960**	**37,342,282,515**	**22,406,954,348**	**53,477,327,922**	**89.49**
일반회계	1,030,609,107,225	925,433,769,322	36,198,258,705	22,212,176,148	46,764,903,050	89.79
특별회계	47,211,392,520	39,160,165,638	1,144,023,810	194,778,200	6,712,424,872	82.94
복지동행국(복지국)	**319,290,115,000**	**303,660,934,865**	**256,901,000**	**10,941,597,628**	**4,430,681,507**	**95.1**
일반회계	318,313,800,000	302,802,285,271	256,901,000	10,833,163,928	4,421,449,801	95.13
특별회계	976,315,000	858,649,594	0	108,433,700	9,231,706	87.94
의료급여기금	932,515,000	815,704,294	0	108,433,700	8,377,006	87.47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43,800,000	42,945,300	0	0	854,700	98.04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92억 9,011만 5천원(마포구 전체 세출 예산현액 중 29.62% 차지)이며, 이 중 3,036억 6,093만 4,865원을 지출(집행률 95.1%)하고, 2억 5,690만 1천원은 이월, 109억 4,159만 7,628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4억 3,068만 1,507원임.

- 일반회계 예산현액 3,183억 1,380만원 중 3,028억 228만 5,271원(예산현액 대비 95.13%) 지출하고 2억 5,69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2,144만 9,801원임.
- 특별회계 예산현액 9억 7,631만 5천원 중 8억 5,864만 9,594원(예산현액 대비 87.94%)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3만 1,706원임.

Ⅱ.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세목별 조서 】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률 ㉰/㉯
합 계	253,508,609,000	248,166,148,880	248,014,670,670	151,478,210	99.9%
세외수입	1,296,335,000	1,780,368,890	1,628,890,680	151,478,210	91.49%
경상적세외수입	816,119,000	865,276,240	865,276,240	0	100%
임시적세외수입	230,216,000	520,431,650	486,080,390	34,351,260	9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0,000,000	394,661,000	277,534,050	117,126,950	70.32%
지방교부세 등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0	100%
조정교부금 등	33,000,000	33,000,000	33,000,000	0	100%
보조금	246,248,887,000	240,199,817,380	240,199,817,380	0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30,387,000	5,952,962,610	5,952,962,610	0	100%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35억 860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81억 6,614만 8,880원이고 이 중 2,480억 1,467만 670원을 수납함.

❍ 실제수납액 내역은

- 국고·시비보조금 등이 2,401억 9,981만 7,380원(96.84%)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억 5,296만 2,610원(2.4%)
- 세외수입 16억 2,889만 680원(0.65%)
- 지방교부세 등 2억원(0.08%),
- 조정교부금 등 3,300만원(0.01%) 순임.

❍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총 1억 5,147만 8,210원으로, 내역은 실뿌리복지과 임시적세외수입 3,435만 1,260원(사유:기타)과 장애인복지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과태료) 1억 1,712만 6,950원(사유:기타 1억 732만 6,950원 / 납기미도래 980만원)임.

【 부서별 세입 결산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253,508,609,000**	**248,166,148,880**	**248,014,670,670**	**151,478,210**	**99.9%**
복지정책과	11,440,210,000	11,450,398,440	11,450,398,440	0	100%
실뿌리복지과 (생활보장과)	73,726,154,000	72,585,462,520	72,551,111,260	34,351,260	99.9%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과)	127,436,377,000	123,142,225,590	123,142,225,590	0	1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과)	40,905,868,000	40,988,062,330	40,870,935,380	117,126,950	99.7%

※ **세입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 복지동행국(복지국) 과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과는 어르신동행과로 실제수납액은 1,231억 4,222만 5,590원이며(수납률 100%),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장애인복지과로 징수결정액 409억 8,806만 2,330원 가운데 1억 1,712만 6,950원(수납률 99.7%)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2. 세출결산

【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단위 : 원)

부서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집행률 (%)
합 계	318,313,800,000	302,802,285,271	256,901,000	10,833,163,928	4,421,449,801	95.13
복지정책과	18,647,649,000	17,769,060,839	6,600,000	75,589,753	796,398,408	95.28
살뜨리복지과 (생활보장과)	86,766,087,000	83,281,469,038	0	2,000,656,476	1,483,961,486	95.98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과)	158,341,446,000	148,347,532,312	11,001,000	8,347,503,508	1,635,409,180	93.6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과)	54,558,618,000	53,404,223,082	239,300,000	409,414,191	505,680,727	97.88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83억 1,380만원이며, 3,028억 228만 5,271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690만 1천원, 보조금 반납금 108억 3,316만 3,928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2,144만 9,801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5.13% 임.

❍ 복지동행국(복지국)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장애인복지과로 전체예산 545억 5,861만 8천원 가운데 534억 422만 3,082원을 지출하여 97.88%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는 어르신동행과로 전체예산 1,583억 4,144만 6천원 가운데 1,483억 4,753만 2,312원을 지출하여 93.68%의 집행률을 보임.

❍ 보조금반납금이 가장 많은 부서는 어르신동행과 83억 4,750만 3,508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가장 적은 부서는 복지정책과 7,558만 9,753원임.

3. 집행잔액(불용액)

【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 】

(단위 : 원)

부 서 명	집 행 잔 액	원인별 잔액 현황				
		보 조 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합 계	4,421,449,801	1,666,729,198	14,022,000	119,666,200	187,144,070	2,433,888,333
복지정책과	796,398,408	14,470,210	0	46,020,100	0	735,908,098
실뿌리복지과 (생활보장과)	1,483,961,486	824,474,921	13,496,000	0	0	645,990,565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정책과)	1,635,409,180	764,410,073	526,000	900,000	187,144,070	682,429,03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과)	505,680,727	63,373,994	0	72,746,100	0	369,560,633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3,183억 1,380만원의 1.39%인 44억 2,144만 9,801원으로, 이는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467억 6,490만 3,050원의 9.45%를 차지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서 상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6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1],

1)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출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잔액(24억 3,388만 8,333원)’, ‘보조금 정산잔액(16억 6,672만 9,198원)’, ‘낙찰차액(1억 8,714만 4,07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억 1,966만 6,200원)’, ‘예산절감액(1,402만 2천원)’ 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 중 ‘지출잔액’의 경우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초 과다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예산이 한정된 재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다한 지출잔액 발생은 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게 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이 요구됨. 아울러 연례적으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 감편성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4. 집행률 저조사업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11건**이며,

○ **사업 중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집행률 0%)은 2건**으로, 어르신동행과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 3천 9백만원과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2억원 임.

○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 보조금 반납되었음.

○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사업은 2025년 8월 서울시 특별교부금(2억원) 사업으로, 당초 마포장애인복지회관(마포구 월드컵로 213)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피난 대피의 어려움과 추가적인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음.

【 집행률 70% 미만 사업 - 11건 】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집행률 (㉯/㉮)
복지정책과 (3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25,500,000	16,255,300	6,600,000	-	2,644,700	63.75%
	재해구호추진	2,700,000	1,440,000	-	-	1,260,000	53.33%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100,000	4,000	-	-	96,000	4%
어르신동행과 (5건)	서울밥상	34,503,000	23,502,000	11,001,000	-	0	68.12%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1,762,160,000	1,149,540,170	-	-	612,619,830	65.23%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	206,663,000	142,119,920	-	-	64,543,080	68.77%
	노인 이동목욕 사업 지원	71,804,000	29,236,846	-	-	42,567,154	40.72%
	코로나19사망자 장례 지원	39,000,000	-	-	39,000,000	0	**0%**
장애인복지과 (3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90,760,000	50,273,640	33,000,000	-	7,486,360	55.39%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254,000,000	1,943,700	-	-	252,056,300	**0.77%**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200,000,000	-	200,000,000	-	0	**0%**

※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미포함)

【 집행잔액(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 11건 】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2,649,420,000	2,315,813,400	-	-	333,606,600	87.4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491,388,000	4,323,964,436	-	55,264,433	112,159,131	96.27%
	보훈대상자 지원	3,354,139,000	3,144,563,650	-	-	209,575,350	93.75%
실뿌리복지과 (3건)	주거급여 지급	26,435,000,000	24,877,813,280	-	1,372,901,920	184,284,800	94.11%
	자활근로사업운영	3,865,414,000	3,319,369,570	-	-	546,044,430	85.87%
	자산형성 지원사업	5,090,586,000	4,529,800,000	-	-	560,786,000	88.98%
어르신동행과 (4건)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119,844,120,000	111,537,586,370	-	7,952,674,990	353,858,640	93.06%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1,762,160,000	1,149,540,170	-	-	612,619,830	**65.23%**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999,037,000	882,906,998	-	-	116,130,002	88.38%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529,680,000	424,899,635	-	-	104,780,365	80.22%
장애인복지과 (1건)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254,000,000	1,943,700	-	-	252,056,300	**0.77%**

○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11건**으로, 이 중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은 2건으로, 어르신동행과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과 장애인복지과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사업임.

○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은 예산현액 17억 6,216만원 중 11억 4,954만 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1,261만 9,830원임.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1억 8,714만 4,070원, 지출잔액 4억 2,545만 5,760원으로, 지출잔액 발생 사유는 2024회계연도에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조성으로 사고이월된 특별교부세(시설비) 6억원을 용도변경(사업내용 변경)하여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에 사용함에 따른 것임.

○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400만원 중 194만 3,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205만 6,300원임.
지출잔액 발생사유는 소송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임.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며,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Ⅲ.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실뿌리복지과]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세입,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가.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9억 3,251만 5천원

징수결정액: 10억 2,228만 4,110원 (예산현액 대비 109.6%)

실제수납액: 10억 2,198만 4,110원 (징수결정액 대비 99.97%)

미 수 납 액: 30만원 (미수납사유: 납기미도래)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다/나)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932,515,000	1,022,284,110	1,021,984,110	-	300,000	99.97%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 9억 3,251만 5천원

지출액: 8억 1,570만 4,294원 (예산현액 대비 87.47%)

보조금반납액: 1억 843만 3,700원 (예산현액 대비 11.63%)

집행잔액: 837만 7,006원 (예산현액 대비 0.89%)

(단위 : 원)

구 분 (조직 - 사업)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나/가)
실 뿌 리 복 지 과	932,515,000	815,704,294	108,433,700	8,377,006	87.47%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의료급여지원)	732,920,000	627,462,724	105,457,270	6	85.6%
예 비 비	8,377,000	0	0	8,377,000	0
보 전 지 출	191,218,000	188,241,570	2,976,430	0	98.44%

2.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①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 ②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사업 ③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가. 세입결산 : 해당사항없음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 4,380만원

지 출 액: 4,294만 5,300원 (예산현액 대비 98.05%)

집행잔액: 85만 4,700원 (예산현액 대비 1.95%)

(단위 : 원)

구 분 (조직 - 사업)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나/가)
화력발전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43,800,000**	**42,945,300**	**0**	**854,700**	**98.05%**
실뿌리복지과	21,800,000	21,800,000	0	0	100%
노고산실뿌리 복지센터 추진	21,800,000	21,800,000	0	0	100%
어르신동행과	22,000,000	21,145,300	0	854,700	96.12%
구립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환 경 개 선	15,000,000	14,641,000	0	359,000	**97.6%**
당인실뿌리복지 센터 운영 지원	7,000,000	6,504,300	0	495,700	**92.9%**

Ⅳ. 예산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이체

1. 예산 이용 :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은 <u>총 15건으로, 전용금액은 8,561만 6천원</u>임.

< 예산전용 내역 >

(단위 : 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 용 금 액	사유
총 15건			85,616,000	
복지정책과 (2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82,000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시비 추가 교부에 대응하여 구비 예산 확보 (복지정책과-27351, 2025.12.19.)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82,000	
	돌봄SOS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494,000	돌봄SOS 사업 추진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비용 지급 부족 예산 확보 (복지정책과-26458, 2025.12.9.)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3,494,000	
실뿌리복지과 (8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00,000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및 홍보용품 구매 (실뿌리복지과-35014, 2025.12.11.)
		201-01 사무관리비	800,0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200,000	무연고 사망자 사후관리 사업(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을 생활행태개선 사업(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안부확인용 생필품 등 구입) 예산으로 전용(실뿌리복지과-32251, 2025.11.18.)
		201-01 사무관리비	2,200,000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전 용 금 액	사유
	고독사 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800,000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관련 공용부 공사 시행 (실뿌리복지과-33696, 2025.12.1.)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1,800,000	
	동 복지기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4,200,000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관련 공용부 공사 시행 (실뿌리복지과-33696, 2025.12.1.)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4,200,000	
	실뿌리복지 동행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1,000,000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관련 공용부 공사 시행 (실뿌리복지과-33696, 2025.12.1.)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11,000,000	
	자원봉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50,000	동 자원봉사캠프 실적평가 동점 발생으로 추가 발생 우수캠프 포상금 지급 (실뿌리복지과-34559, 2025.12.8.)
		303-01 포상금	250,000	
	자활근로사업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0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관련 면접관 참석수당 지급 (실뿌리복지과-12079, 2025.5.9.)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00,000	
	인력운영비(자원봉사 코디네이터-국고보조)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	△400,000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지급(실뿌리복지과-36802, 2025.12.26.)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0,000	
장 애 인 복 지 과 (5 건)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3,000,000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장애인보조견) 제작 (장애인복지과-28173, 2025.12.16.)
		201-01 사무관리비	3,000,000	
	사람을 보라 축제	201-03 행사운영비	△8,090,000	제3회 마포구 사람을 보라 축제 관련, 복지기관 부스 운영 및 행사 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장애인복지과-7697, 2025.3.31.)
		307-05 민간위탁금	8,090,000	
	점자도서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000,000	마포구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 관련 마포누구나 BI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복지과-21360, 2025.9.24.)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000,000	
	발달장애인 등 안심보험 가입	307-06 보험금	△25,000,000	'누구나 카페' 사업과 연계한 마포구 특화 창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장애인복지과-16007, 2025.7.15.)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5,000,000	
	점자도서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000,000	누구나 카페 1호점 조성 리모델링 공사 예산 확보 (장애인복지과-12536, 2025.5.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20,000,000	

❍ 예산의 전용은 집행과정에서의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나 여건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임. 전용은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집행잔액에 대한 임의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나 예산 확보 목적, 행정 오류 치유 등을 위해 전용 등의 제도가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용의 배경, 사유,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동행국(복지국) ‘25년도 예산변경 사용건수는 **총 11건**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 **5,179만 7천원**으로 나타남.

< 예산변경 내역 >

❍ 일반회계

(단위: 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일자	사유
합계	**9건**	**△42,797,000**	**42,797,000**		
복지정책과 (2건)	복지행정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2,500,000		2025-09-17	마포실뿌리복지센터 착공식 개최 (실뿌리복지과-25376, 2025.9.15.)
	복지행정 기능강화 (행사운영비)		2,500,000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행사운영비)	△6,600,000		2025-11-0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홍보비 예산 확보 (복지정책과-23200, 2025.10.30.)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사무관리비)		6,600,000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일자	사유
어르신동행과 (4건)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사업보조)	△350,000		2025-10-29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족 예산 확보(어르신동행과-32952, 2025.10.24.)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50,000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사업보조)	△331,000		2025-12-19	2025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관련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어르신동행과-39954, 2025.12.17.)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3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무관리비)	△6,000,000		2025-12-0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식 개선 홍보비 예산 확보(어르신동행과-38350, 2025.12.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6,0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무관리비)	△500,000		2025-12-0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업무능력 향상 교육 강사비 지급(어르신동행과-38350, 2025.12.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행사운영비)		500,000		
장애인복지과 (3건)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20,000		2025-12-17	무장애도시 모니터링 활동수당 지급(장애인복지과-28173, 2025.12.16.)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20,000		
	장애인식개선 및 시책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46,000		2025-08-27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차량 자동차세 납부 예산 부족분 확보(장애인복지과-18905, 2025.8.25.)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46,00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6,350,000		2025-11-27	2025년 장애인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족 예산 확보(장애인복지과-26006, 2025.11.24.)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6,350,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 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일자	사유
합계	**1건**	**△6,000,000**	**6,000,000**		
실뿌리복지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료급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6,000,000		2025-06-23	재가의료급여사업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부족분 확보(실뿌리복지과-16100, 2025.6.19.)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료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000,000		

❍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단위: 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일자	사유
합계	**1건**	**△3,000,000**	**3,000,000**		
어르신동행과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		2025-11-28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간판 제작 예산 부족분 확보 (어르신동행과-36941, 2025.11.27.)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0		

4.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84건**, 이체금액은 **일반회계 741억 688만 9천원, 특별회계 6억 6,316만 4천원**으로 2025. 1. 1.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임.

< 예산이체 내역 >

가. 일반회계

(단위: 원)

연번	조 직	건 수	사 유	금 액
계		**74**		**74,106,889,000**
1	어르신동행과 복지정책과	5	행정기구 개편(2025. 1. 1.)	71,640,000
2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28	행정기구 개편(2025. 1. 1.)	312,748,000
3	어르신동행과 실뿌리복지과	3	행정기구 개편(2025. 1. 1.)	8,868,000
4	장애인복지과 실뿌리복지과	38	행정기구 개편(2025. 1. 1.)	73,713,633,000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원)

연번	조 직	건 수	사 유	금 액
계		**10**		**663,164,000**
1	장애인복지과 실뿌리복지과	10	행정기구 개편(2025. 1. 1.)	663,164,000

< 다 음 페 이 지 계 속 >

Ⅴ. 예산 이월 현황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2025 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5건, 이월액은 2억 3,300만 1천원**임.

❍ **부서별 내역**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5건)		305,843,000	55,360,000	233,001,000	
어르신동행과 (1건)					
서울밥상	사회복지 사업보조	34,503,000	23,502,000	11,001,000	서울밥상 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25. 9.) 및 사업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2026년도에 집행예정인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명시이월 하고자 함
장애인복지과 (4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사무관리비	46,340,000	13,196,000	33,000,000	특별교부금 교부('25. 9.) 및 모바일 전자고지 기능개선,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구축 기간에 약 4개월 정도 소요되어 연도 내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누구나카페조성	시설비	25,000,000	18,662,000	6,300,000	「마포 누구나 카페」2호점 예정지인 건강나눔카페(보건소1층)의 계약 만료일이 2025. 11. 20.자로 예정되어 있어 올해는 설계만 가능하고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시설비	175,000,000	0	157,700,000	특별교부세 교부('25. 8.) 및 당초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7층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피난 대피의 어려움과 추가적인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하 1층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설계용역 외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는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25,000,000	0	25,000,000	특별교부세 교부('25. 8.) 및 당초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7층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피난 대피의 어려움과 추가적인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하 1층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설계용역 외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는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2건, 2,39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부서별 내역**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건)		192,000,000	9,608,900	23,900,000	
복지정책과 (1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사무관리비	17,000,000	9,608,900	6,600,000	2026 이웃돕기사업 마을버스 고정광고면 홍보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 (2026. 2. 14.)
장애인복지과 (1건)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시설비	175,000,000	0	17,300,000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용역 기한 연장되어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 처리하고자 함

Ⅵ. 기금 결산

(단위 : 원)

구 분 / 기 금 명	'24년말 조 성 액 ㉮	2025년도 증감액			'25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2,322,678,994	△33,805,377	224,882,637	258,688,014	2,288,873,617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복지정책과]	659,325,621	△38,880,523	147,167,491	186,048,014	620,445,098
자활기금 [실뿌리복지과]	1,663,353,373	5,075,146	77,715,146	72,640,000	1,668,428,519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6억 5,932만 5,621원이며, 2025년에 1억 4,716만 7,491원을 조성하고, 1억 8,604만 8,014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6억 2,044만 5,098원이 조성되었음. 재원의 조달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등이며, 사용내역은 임시거소 관리 및 운영비 지출, 마포청년하우스 공사에 따른 시설비 지출 등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6억 6,335만 3,373원이며, 2025년에 7,771만 5,146원을 조성하고, 7,264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16억 6,842만 8,519원이 조성되었음. 재원의 조달은 이자수입 및 지역자활사업지원비 집행잔액이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로 사용하였음.

Ⅶ.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예산편성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될 것임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총 1건 어르신동행과 '경로당 시설운영관리'**로 **1억 3천만원**을 지출함.

〔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30,000,000	130,000,000				
어르신 동행과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기타자본이전)	130,000,000	130,000,000			2025-09-08	잔다리문화공원 이용 활성화 및 문화창작센터 건립공사로 기존 홍익 경로당 이전 필요에 따른 임차보증금 예산 확보 (어르신동행과-26597, 2025.8.28.)

Ⅷ. 결산 검사 개선(권고) 사항

□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권고사항 목록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소관부서
1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실뿌리복지과
2	기금 사용 활성화 방안 강구	실뿌리복지과
3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장애인복지과
4	지표의 양적 편향 및 측정산식의 신뢰도	실뿌리복지과

1.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불용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1.9%	69.5%	66.2%	7.5%

2025년은 직원 1명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일시적으로 미집행사유가 감소함.

1.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 상담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등) 및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p. 304~306)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인력(의료급여관리사)을 배치하고 있음.

< 배치기준 >

수급자 3,000명 이하	1명
수급자 3,000명 초과 ~ 6,000명 이하	2명
수급자 6,000명 초과 ~ 9,000명 이하	3명
수급자 9,000명 초과 ~ 12,000원 이하	4명

※ 마포구 의료급여수급자 수 7,640명(2025.5.23.기준)

2.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임. 단, 2025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함.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 제7조제2항 별표1) 정원 외 상근인력 정원표에 따라, 마포구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는 2명임.

그러나 2023년, 2024년, 2025년 연속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대로 마포구에 3명분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마포구에 3명분의 예산을 계속 배정하고 있어 100% 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추후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 서울시를 포함한 26개 지자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인력 배치 기준을 미충족하는 실정임
(ex. 11개 자치구: 결원이 1명~2명)

2. 기금 사용 활성화 방안 강구-자활기금

○ 현황 및 문제점

<자활기금>

- 자활기금 조성액 1,741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 72백만원

자활기금 조성액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 비율이 4.13%로 저조함.

○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설치목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자를 위한 직무 소양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실질적 활용방안 권고함.

3.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성과평가 항목의 장애인편의 시설 시정명령 대비 시정이행율의 측정산식(시정이행 건수/시정명령 건수*100%) 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율이 66%로 저조함.

성과평가 측정산식의 (시정이행 건수/시정명령 건수*100%)의 시정이행 건수를 시행노력 건수(현장방문과 독촉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노력)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시정명령 대비 시정이행건수를 현장방문과 독촉공문발송건수 등 적극적인 노력 건수를 시행노력 건수로 측정산식 변경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4. 지표의 양적 편향 및 측정산식의 신뢰도

ㅇ 현황 및 문제점

성과지표	측정산식	25 년		
1동 1실뿌리복지센터 개소 실적 (개소)	당해연도 실뿌리복지센터 개소 수	목표	달성	달성률
		5	8	160%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율(%)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가구수/목표가구수(19500명) * 100	100	100	100%

‘1동 1실뿌리복지센터 개소 실적’을 단순 개소 수(양적 지표)로만 설정하여, 실제 복지 서비스의 운영 수준이나 이용률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 또한, 목표치(5개) 대비 달성률이 160%(8개)에 달하는 것은 초기 수요 예측이 미흡했거나, 성과 달성이 용이하도록 목표치를 과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율’의 경우, 2025년 목표와 실적을 각각 ‘100(가구)’으로 기재하여 100% 달성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측정산식은 인원수(19,500명)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어, 지표의 단위(가구)와 측정 데이터(인원)가 불일치함.

ㅇ 개선 및 권고사항

실뿌리복지과는 160%의 높은 달성률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 종료 등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1차 추경(6월), 2차 추경(9월)을 통해 개소 수를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양적 팽창에 치중한 결과로 판단됨. 현재의 단순 개소 실적 지표로는 투입된 예산 대비 실질적인 복지 증진 효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는바, 향후 이용자 수, 사례관리 성공률, 서비스 만족도 등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 도입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목표 가구수(19,500명) 설정에 있어,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실제 기초 조사 자료가 미비하여 목표 설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성과 달성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의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지표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표 단위와 실제 측정 데이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정비를 통해 성과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할 것임.

Ⅸ. 검토 의견

❍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 집행 기준을 준수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 할 것임.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490억 3,665만 4,780원을 실제수납하여 수납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과목에서 국고 및 서울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3,192억 9,011만 5천원 중 95.1%에 해당하는 3,036억 6,093만 4,86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3,068만 1,507원으로 이는 마포구 전체 집행잔액에 8.28%를 차지하는 수준임. 특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지출잔액”이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집행잔액에 54.95%에 해당하는 24억 3,474만 3,039원이었음.

 또한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9억 8,327만 3,4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집행잔액 과다 발생 원인(추계 및 수요

예측 부정확, 과다 편성,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지연, 사전절차 지연, 집행요건 미충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그 중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어르신동행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경로당 조성’임.

-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편성과 배정 시기의 적절성, 예산과다편성 여부, 연례적 불용액 발생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5년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5건, 8,561만 6천원이며, 예산변경사용은 총 11건(일반회계 9건, 4,279만 7천원 / 특별회계 2건, 900만원), 예산이체는 총 84건(일반회계 74건, 741억 688만 9천원 / 특별회계 10건, 6억 6,316만 4천원)임.

❍ 이용, 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나 입찰공고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로 구분됨.

❍ 2025회계연도 복지동행국(복지국) 이월액 건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총 7건**으로,

- 명시이월 주요 내역은 어르신동행과 ‘서울밥상’ 사회복지사업보조 1,100만 1천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사무관리비 3,300만원, ‘누구나카페 조성’ 시설비 630만원, ‘시각장애인경로당 조성’ 시설비 1억 5,770만원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임

- 사고이월 주요 내역은 복지정책과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사무관리비 660만원,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경로당 조성’ 시설비 1,730만원임.

❍ 이월사업은 사업비 회계연도말 교부,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준비기간 부족, 심의 절차 지연 등에 따른 기간소요 및 발주 지연으로 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 이월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복지정책과)와 자활기금(실뿌리복지과)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380만 5,377원 감소한 22억 8,887만 3,617원으로 결산되었음.

❍ 특히 자활기금은 조성액(1,741백만원)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72백만원) 비율이 4.13%로 저조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 기금설치목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부합하도록 참여대상자를 위한 직무 소양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지원 등 실질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복지동행국(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 어르신동행과의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관련하여 잔다리문화공원 이용 활성화 및 문화창작센터 건립공사로 기존 홍익경로당 이전 필요에 따른 임차보증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집행함. (2025.09.08. 지출)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는 예비비 편성 취지와 예비비 지출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상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므로 전용 가능성은 없었는지, 추가경정예산(2025. 8. 제2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어르신동행과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6억 3,540만 9,180원이고, 집행잔액 사유 중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지출잔액이 6억 8,249만 9,037원 임.

❍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권고에 대해 각 부서는 후속 조치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기반 구조조정 및 사업 타당성 재평가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장홍용 〉

1. 안 건 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2. 안건번호

의안번호 : 제26-82호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6년 8월 21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4. 회부일자

회부일자 : 2026년 8월 24일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Ⅰ. 예산 규모

1.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마포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627억 1,12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06억 7,565만 4천원 대비 420억 3,560만원(4.57%)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9,213억 8,48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억 1,655만 9천원(4.33%)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413억 2,64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1,904만 1천원(10.18%) 증가하였음.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62,711,254	920,675,654	42,035,600	4.57%
일 반 회 계	921,384,837	883,168,278	38,216,559	4.33%
특 별 회 계	41,326,417	37,507,376	3,819,041	10.18%
의료급여기금	1,105,896	793,426	312,470	39.38%
마포농수산물시장	12,846,607	11,151,737	1,694,870	15.20%
주차장	24,524,630	22,182,483	2,342,147	10.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4,161	82,599	591,562	716.19%
건축안전	890,899	799,183	91,716	11.48%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284,224	2,497,948	△1,213,724	△48.59%

2.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2,763억 71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388만 5천원(2.6%)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76,307,144	269,303,259	7,003,885	2.60%
일 반 회 계	275,201,248	268,509,833	6,691,415	2.49%
특 별 회 계	1,105,896	793,426	312,470	39.38%
의료급여기금	1,105,896	793,426	312,470	39.38%

❍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3,522억 5,460만 1천원으로, 마포구 전체 추경 예산의 36.59%이며, 기정예산보다 170억 4,009만 8천원(5.08%)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52,254,601	335,214,503	17,040,098	5.08%
일 반 회 계	351,148,705	334,071,077	17,077,628	5.11%
특 별 회 계	1,105,896	1,143,426	△37,530	△3.28%
의료급여기금	1,105,896	793,426	312,470	39.38%
화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0	350,000	△350,000	△100%

Ⅱ.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제1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752억 12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85억 983만 3천원 대비 66억 9,141만 5천원(2.49%)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2억 5,81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287만 2천원(△11.46%) 감액되었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8억 5,428만 7천원이 증가한 2,737억 7,447만 5천원으로, 복지국 전체 세입의 99.48%를 차지함

□ 재원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75,201,248	268,509,833	6,691,415	2.49%
세 외 수 입	1,258,103	1,420,975	△162,872	△11.46%
경상적세외수입	988,100	1,150,972	△162,872	△14.15%
임시적세외수입	3	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70,000	270,000	0	0.00%
조정교부금등	168,670	168,670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68,670	168,670	0	0.00%
보 조 금	273,774,475	266,920,188	6,854,287	2.57%
국고보조금등	190,852,366	186,164,384	4,687,982	2.52%
시·도비보조금등	82,922,109	80,755,804	2,166,305	2.68%

□ 조직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구성비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75,201,248	100%	268,509,833	6,691,415	2.49%
복 지 정 책 과	31,806,994	11.56%	31,660,291	146,703	0.46%
생 활 보 장 과	80,016,968	29.08%	74,521,313	5,495,655	7.37%
통 합 돌 봄 과	1,657,197	0.6%	1,586,233	70,964	4.47%
어 르 신 정 책 과	121,089,923	44%	120,955,890	134,033	0.11%
장 애 인 정 책 과	40,630,166	14.76%	39,786,106	844,060	2.12%

○ 복지정책과는 318억 69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70만 3천원, 0.46% 증액

○ 생활보장과는 800억 1,696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9,565만 5천원, 7.37% 증액

○ 통합돌봄과는 16억 5,71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096만 4천원 4.47% 증액

○ 어르신정책과는 1,210억 8,992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03만 3천원, 0.11% 증액

○ 장애인정책과는 406억 3,01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406만원, 2.12% 증액

□ 세입예산안 주요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국고보조금등]	954,956	879,956	75,000
	긴급복지지원[시·도비보조금등]	477,478	439,978	37,5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전담인력 인건비)[시·도비보조금등]	24,855	24,402	453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시·도비보조금등]	2,882,882	2,849,132	33,750
생 활 보 장 과	생계급여 지급[국고보조금등]	32,052,569	29,622,604	2,429,965
	주거급여 지급[국고보조금등]	17,459,062	15,970,088	1,488,974
	자활근로사업운영[국고보조금등]	2,081,821	2,248,733	△166,912
	지역자활센터운영[국고보조금등]	314,119	310,360	3,759
	자산형성지원사업[국고보조금등]	2,210,325	2,217,311	△6,986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고보조금등]	50,907	48,900	2,007
	생계급여 지급[시·도비보조금등]	14,957,866	13,823,882	1,133,984
	주거급여 지급[시·도비보조금등]	8,147,564	7,452,708	694,856
	자활근로사업운영[시·도비보조금등]	971,517	1,049,408	△77,891
	지역자활센터운영[시·도비보조금등]	208,789	213,638	△4,849
	자산형성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등]	1,031,485	1,034,744	△3,259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시·도비보조금등]	50,907	48,900	2,007
통 합 돌 봄 과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확충))[국고보조금등]	90,000	86,400	3,600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공무원인건비))[국고보조금등]	34,650	0	34,65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국고보조금등]	26,320	20,000	6,32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시·도비보조금등]	13,160	10,000	3,160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확충)) [시·도비보조금등]	105,000	100,800	4,200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공무원인건비)) [시·도비보조금등]	40,425	0	40,425
	1인가구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등]	77,477	98,868	△21,391
어르신정책과	수변카페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188,880	0	188,880
	수변카페 운영 수입 [사업수입]	0	351,752	△351,752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등]	93,026,136	92,760,856	265,280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시·도비보조금등]	11,628,267	11,595,107	33,160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운영 지원(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도비보조금등]	45,752	47,287	△1,535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국고보조금등]	3,189,111	2,936,672	252,439
	장애수당(기초) 지급 [국고보조금등]	531,521	495,477	36,044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국고보조금등]	179,857	212,050	△32,19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국고보조금등]	12,019,599	11,797,377	222,222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국고보조금등]	494,067	420,254	73,813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도비보조금등]	1,594,556	1,468,336	126,220
	장애수당(기초) 지급 [시·도비보조금등]	372,065	346,834	25,231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시·도비보조금등]	125,900	148,435	△22,53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도비보조금등]	6,610,779	6,488,557	122,222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시·도비보조금등]	271,737	231,140	40,597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511억 4,87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40억 7,107만 7천원 대비 170억 7,762만 8천원(5.11%) 증가하였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구성비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51,148,705	100%	334,071,077	17,077,628	5.11%
복 지 정 책 과	41,807,468	11.9%	40,867,721	939,747	2.30%
생 활 보 장 과	94,498,525	26.91%	85,870,737	8,627,788	10.05%
통 합 돌 봄 과	1,201,015	0.34%	1,141,799	59,216	5.19%
어르신정책과	156,444,867	44.55%	152,377,765	4,067,102	2.67%
장애인정책과	57,196,830	16.3%	53,813,055	3,383,775	6.29%

○ 추경 편성액 순으로 살펴보면 생활보장과 7건 (86억 2,778만 8천원), 어르신정책과 10건 (40억 6,710만 2천원), 장애인정책과 4건 (33억 8,377만 5천원), 복지정책과 7건 (9억 3,974만 7천원), 통합돌봄과 4건 (5,921만 6천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복지정책과 (7건)				
매칭	긴 급 복 지 지 원	1,909,912	1,759,912	150,000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시25/구25)
매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 영 지 원	149,584	148,678	906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민간 간사)운영 - 확정내시에 따른 시구비 반영 (시 50/ 구 50)
매칭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운 영 지 원**	4,769,794	4,751,577	18,217	o 운영보조금 예산 변경내시 (인건비 기준 변경)에 따른 시구비 반영 o 기능보강사업 시비 미지원 결정에 따른 감편성
매칭	보 훈 단 체 지 원	212,363	203,363	9,000	o 「2026년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o 2026년도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자체	**호 국 보 훈 감 사 축 제**	55,990	86,640	△30,650	o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계획 o 2026 호국보훈 감사축제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매칭	인 력 운 영 비 (통 합 사 례 관 리 사)	251,492	249,969	1,523	o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소급분 (25년, 26년) o 균시구 사업 매칭 반영,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790,751	0	790,751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생활보장과 (7건)				
매칭	생 계 급 여 지 급	53,483,919	49,433,977	4,049,942	o 사업비 부족분 국시구비 반영 (국60/시28/구12)
매칭	주 거 급 여 지 급	29,100,288	26,618,664	2,481,624	o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60/시28/구12)
매칭	자 활 근 로 사 업 운 영	3,469,703	3,747,887	△278,184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60/시28/구12)
매칭	지 역 자 활 센 터 운 영	684,467	683,677	790	o 확정·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시25/구25)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매칭	자 산 형 성 지 원 사 업	3,683,875	3,695,517	△11,642	o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60/시28/구12)
매칭	인 력 운 영 비 (의 료 급 여 관 리 사)	165,287	158,758	6,529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반영 o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제 납부보험료 (구비) 증가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78,729	0	2,378,729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통합돌봄과 (4건)				
매칭	일 상 돌 봄 서 비 스 사 업	52,640	40,000	12,640	o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시25/구25)
매칭	지 역 돌 봄 통 합 서 비 스 사 업	311,452	209,935	101,517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o 2026년 마포형 돌봄통합 특화서비스 추진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매칭	1 인 가 구 지 원 사 업	126,554	191,336	△64,782	o 확정내시에 따른 시구비 반영 o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사업비 감편성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9,841	0	9,841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어르신정책과 (10 건)				
매칭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116,283,050	115,951,450	331,600	o 당초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률 고려 일부만 편성하였으나 현재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증액 필요
매칭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재 가 급 여 지 원	5,887,452	5,827,371	60,081	o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시30/구70)
자체	**수 변 카 페 운 영**	89,128	280,746	△191,618	o 수변 카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시설관리공단 직영 운영 → 공단 위탁 후 민간 사용허가)
자체	경 로 당 물 품 지 원	113,880	93,880	20,000	o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 건립 사업비 47,103천원 집행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반영
자체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286,079	296,079	△10,000	o 송암경로당 묵시적 계약갱신에 따른 1개소 보증금 인상분 감편성
자체	**효 도 밥 상 경 로 당 조 성 및 운 영**	135,673	176,589	△40,916	o 동주민센터 신규 급식기관 조성 및 추가 급식기관 조성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액 감소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추경사유 및 내역
매칭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운 영 지 원	296,699	298,234	△1,535	o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자체	신 수 · 당 인 실 뿌 리 복 지 센 터 운 영	43,220	60,020	△16,800	o 센터 각 실별 부서 별도 운영 및 모자분리(계량기) 공사에 따른 공용요금 감소
자체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신규]**	28,171	0	28,171	o 민선9기 구청장 공약 1호 o「그냥해드림 센터」신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88,119	0	3,888,119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장애인정책과 (4건)				
매칭	장 애 인 연 금 급 여 지 급	6,378,222	5,873,344	504,878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시25/구25)
매칭	장 애 수 당 지 급	1,422,756	1,415,054	7,702	o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시35/구15)
매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9,099,371	28,507,302	592,069	o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국50/시27.5/구22.5)
	반 환 금 기 타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79,126	0	2,279,126	o 이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

□ [자체] 주요 편성 사업

○ **복지정책과 '호국보훈감사축제' 사업**은 제4회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개최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5만원을 감편성하였음. 추경사유는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구조 조정 계획(2026.4.) 및 2026년 6월 13일 제4회 호국보훈 감사축제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행사운영비 △3,03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 △3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음.

○ **어르신정책과 '수변카페 운영' 사업**은 8,912만 8천원으로 기정액 2억 8,074만 6천원 대비 △1억 9,161만 8천원 감액하였음.

추경사유는 수변 카페운영 방식을 '시설관리공단 직영 운영'에서 '공단 위탁 후 민간 사용허가'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100만원, 수변 카페 운영비(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9,061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음.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본예산 편성 후 동일 회계연도 중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당초 예산의 약 68%를 감액하게 된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운영방식 및 사업비 산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본 사업 관련 세입예산안에서도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1억 8,888만원 신규편성하고 기존 수변카페 운영 수입 3억 5,175만 2천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보임.

○ **어르신정책과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은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급식기관을 조성하고 어르신에게 식사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567만 3천원으로 기정액 1억 7,658만 9천원 대비 △4,091만 6천원 감액하였음.

추경사유는 동주민센터 신규 급식기관 조성(공덕동주민센터, 2026.3.) 및 추가 급식기관 조성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액 감소임.

□ [매칭] 주요 편성 사업

○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업은 47억 6,979만 4천원으로 기정액 47억 5,157만 7천원 대비 1,821만 7천원 증가하였음.

-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성산・염리),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보조금 예산 변경내시(인건비기준 변경-초과근무수당 상한액 상승)에 따른 시구비를 반영하여 1억 1,015만 6천원을 증액함.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9,193만 9천원 감액되었음. 이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시비 미지원 결정에 따른 것이나 기능보강사업 감액이 시설 이용환경 개선이나 안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신규 편성 사업

▌그냥해드림센터 운영〔어르신정책과〕

○ 어르신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일상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9기 공약사업임.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추가경정사업 내용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센터 환경 조성비, 공구 등 구입비, 재료구입비, 차량 렌트비, 복합기 렌탈비, 정수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매, 홍보비, 안전화, 안전모, 조끼등	사무관리비	구 26,440	0	구 26,440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비,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수도전기요금	공공운영비	구 1,731	0	구 1,731
	계	**28,171**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사업 개요>

○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 위치: 당인동 12-20, 2층(舊 상수어린이집)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운영방법: 콜전담인력을 통한 생활속 불편민원 접수 후 지원인력이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 운영시기: 2026. 10. 1. ~

○ **사업대상**
-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조손가정

○ **사업내용**: 가정내 전기·기계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등

○ **사 업 비: 48,171천원** (※추경: 28,171천원, 전용: 20,000천원)

3. 특별회계

○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종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1억 4,342만 6천원 대비 △3,753만원이 감액한 11억 589만 6천원으로 △3.28% 감소했음.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105,896	1,143,426	△37,530	△3.28%
의 료 급 여 기 금 [생 활 보 장 과]	1,105,896	793,426	312,470	39.38%
화 력 발 전 지 역 자 원 시 설 세 [어르신정책과]	0	350,000	△350,000	△100%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생 활 보 장 과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등]	382,171	373,110	9,061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등]	382,171	373,110	9,061
	202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97,846	0	97,846
	202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4,216	0	54,216
	202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4,216	0	54,2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0,753	45,649	85,1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4,523	1,557	2,966

○ 세출예산 편성내역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시 반영

- 국・시비 반환금

(단위: 천원)

부 서	사업 내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생 활 보 장 과	의료급여제도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1,830	480	1,350
	재가의료급여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5,000	14,000	11,000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의료 및 회복비]	219,132	231,360	△12,228
	재가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0	27,000	18,000
	2025년 의료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47,174	0	147,174
	2025년 의료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7,174	0	147,174

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 편성내역: 없음

○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업 내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어 르 신 정 책 과	상수빗물펌프장 승강기 설치 공사 [시설비]	0	350,000	△350,000

- 상수빗물펌프장 승강기 설치사업은 상수빗물펌프장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경사유는 상수빗물펌프장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전(입주)에 따른 기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운영 종료로 승강기 설치 추진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감추경함.

Ⅲ. 검토의견

○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액 3,340억 7,107만 7천 원 대비 170억 7,762만 8천원이 증가한 3,511억 4,870만 5천원으로, 약 5.1%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6억 4,500만 5천원, 시비 21억 2,5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도 102억 9,841만 6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추경은 생계·주거급여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법정급여 확대와 긴급복지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및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등이 전체적인 증액 요인임. 특히 복지국은 법정·의무적 복지지출과 국·시·구비 매칭사업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복지수요 변화가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구비 부담 증가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생활보장과는 기정액 대비 86억 2,7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국 전체 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40억 4,994만 2천원과 주거급여 24억 8,162만 4천원의 증액으로,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법정급여라는 점에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계·주거급여와 같은 계속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만큼, 수급자 증가 및 선정기준 변화 등 구체적인 증액요인을 확인하고 최근 수급자 추이를 향후 본예산의 사업량 산정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지원가구 증가 추이,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규모 등을 토대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규모의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음.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7억 9,075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25년도 기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약 6억 5,820만 7천원임.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에 따른 반환금도 포함되어 있음. 과년도 사업의 환수금은 사후 환수 및 정산절차 등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업의 반환금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만큼 환수 결정 및 실제 징수 시점, 상급기관의 반납고지 시기 등을 확인하여 장기간 미반납 상태로 관리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은 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교부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 및 미집행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규모의 잔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산정과 집행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종합하면, 금번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적 복지지출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재원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인 편성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복지예산은 사업의 특성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출되고 국·시·구비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단순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감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실제 대상자와 집행실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편성하여, 6개월이내 집행이 추진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의 타당성, 한정된 재원이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